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공채·경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 적용 시험

- ▶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 ▶ 지역인재(7·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2 편의지원 신청 방법(사전신청 또는 원서접수기간 신청)

- 편의지원 신청은 원서접수 전 사전신청*기간에 등록하는 방법 또는 원서접수 시 등록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편의지원 사전신청과 별개로 원서접수를 추가로 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편의지원 신청 및 관련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편의지원 신청 방법 안내 ◇

편의지원 사전신청 기간
(p.9 사전신청 기간 표 참고)

원서접수 기간
(p.7 표 참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온라인 신청

사전신청 페이지

원서접수 페이지

- ① 편의지원 안내문 확인
- ②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
- ③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 기재
- ④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자는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p.5)



서류 제출(제출대상인 경우)

사전신청자는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원서접수기간 신청자는 접수기간 내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원본을 등기우편 제출

* 서류제출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7·9급) / 공개채용2과(5급·외교관후보자) /
경력채용과(경력채용) 편의지원 담당자 앞



신청 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결과 게시(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전신청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
(p.9 사전신청기간 표 참고)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유의사항]

- 편의지원 사전신청은 원서접수와 별개의 서비스로, **사전신청을 하더라도 원서접수를 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청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참고4] '편의지원 사전신청 안내'(p.8~9)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p.5)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1](p.5)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 ※ 논문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은 선택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접수합니다.(필기시험이 없는 경채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 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단,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공채시험(7·9급)에서는 **장애인 모집단위에서만 시험 시간 연장 편의지원이 제공됩니다.**
 - (주의!) 사전신청 시 시험시간 연장을 승인 받았더라도, 장애인 모집단위가 아닌 일반 모집단위로 원서접수 시 시험시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예) 사전신청 시 1.5배 시간연장 승인 → 9급 검찰직 원서접수: “시간연장 불가”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참고 3]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p.7))
 -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20년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 단, 해당 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 [참고3] p.7의 시험별 진단서 발급 유효기간 참조

(주의!) '20년도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진단서 발급일이 '19.2.24.이전 이라면, 인정기간이 지났으므로 '21년도 편의지원 신청 시 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19.2.25. 이후)의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편의지원 사전신청자 및 원서접수 기간 편의지원 신청자의 편의지원 내역을 취합하여 각 시험 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오니, 수험생은 응시 예정 시험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험	담 당	전화번호
7·9급 공채시험	공개채용1과	☎ 044-201-8247~51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공개채용2과	☎ 044-201-8362~63
경채시험 등	경력채용과	☎ 044-201-8245, 8375~6

참고 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필기시험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각부)		
지체 장애인	상지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인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의사 진단서 (원본)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시각 장애인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 음성지원컴퓨터	의사 진단서 (원본)	기존 1~2급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기존 3급 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기존 3급 1,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 음성지원컴퓨터	의사 진단서 (원본)	기존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	기존 4.5급 1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의사 진단서 (원본)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0이하
		·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2~6급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검토 후 안내	-	
	임신부	· 낮낮이조절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 시험중화장실 사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진단서 (원본)	-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7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7급 지역인재수습직원 선발 1차시험(PSAT)의 경우, 확대 문제지 중 150%(18point) 선택 시 A2 규격으로 제공됩니다.
 ※ 점자문제지는 개정된 점자규정('17.3.28.시행)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 과학, 제2외국어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으며, 수험은 점자문제지만 제공
 ※ 음성지원 s/w 탑재 컴퓨터는 시험장 상황에 따라 windows 7 또는 windows 10으로 제공됩니다.
 * , ** 해당 항목 장애유형(기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면접시험

장애유형 및 정도		면접시험 편의지원 내용	비고
지체 장애인	상지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달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기존 1~6급
	하지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달도우미 지원 · 휠체어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인	공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달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시각 장애인	공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전달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장애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장애인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관련서식 점자 지원 · 음성지원컴퓨터	기존 1~2급 기존 3급 2호 4급 2호 (점자 필요)
	·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 응시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청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기존 2~6급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임신부	· 높낮이 조절책상 · 전달도우미 지원	-

※ 점자(음성지원PC)사용, 면접시간 20분 연장을 위한 장애증상 증빙은 필기시험 편의지원 시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함

참고 3 (해당 응시자)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학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로 증빙 가능
- 발급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원본)**

구 분	5급 공채 및 외교관 선발	7급 공채	9급 공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21년 2월 7일	2021년 5월 27일	2021년 2월 24일
유효 진단서 발급일	2019년 2월 8일 이후	2019년 5월 28일 이후	2019년 2월 25일 이후
구 분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선발	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선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small>*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small>	2021년 6월 7일(예정)	2021년 2월 4일	2021년 8월 5일(예정)
유효 진단서 발급일	2019년 6월 8일 이후	2019년 2월 5일 이후	2019년 8월 6일 이후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아래 3가지)
 -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및 시야각 명기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를 신청할 경우
 ⇒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신청할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 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 ①~③ 반드시 기재
시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력/시야: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점자문제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시력: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뇌병변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증상: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기 타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단,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
		① 장애유형 및 정도: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 증상: 편안 약시와 無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등	

*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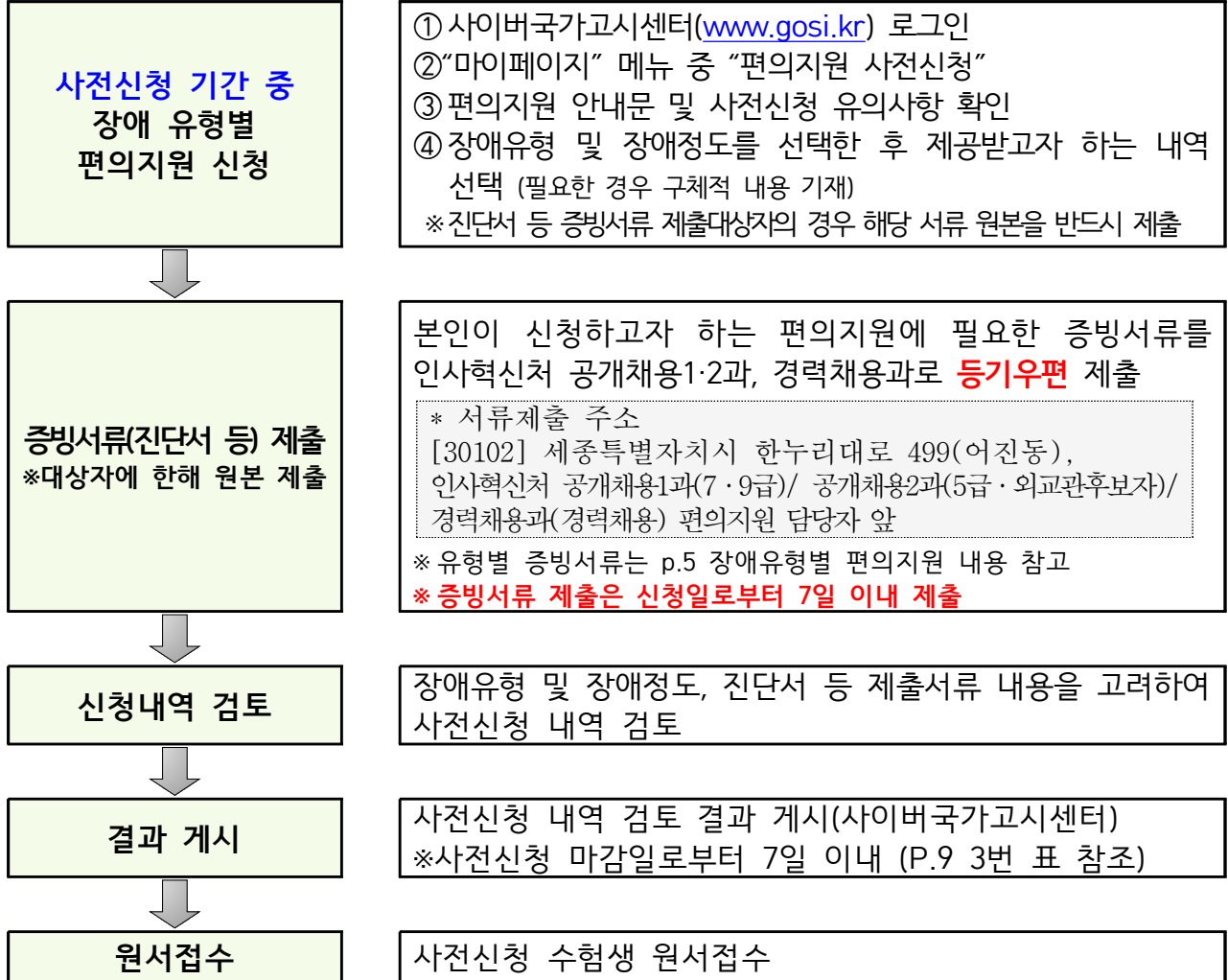
참고 4 편의지원 사전신청 안내

1. 개요

- 편의지원 사전신청이란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했던 편의지원 신청을 개선하여 원서접수 기간 외에 그 이전에도 미리 편의지원을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편의지원 사전신청을 통해
 - 편의지원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보완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며,
 -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편의지원을 미리 확인하여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 개인별 맞춤형 편의지원 제공으로 필요한 편의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응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편의지원 사전신청을 원하는 수험생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안내된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사전신청 절차



3. 사전신청 기간

차수	기간	승인(예정)일
1차	2021. 1. 4. ~ 1. 31.	2021. 2. 5.
2차	2021. 6. 1. ~ 6. 30.	2021. 7. 14.
3차	2021. 12. 1. ~ 12. 31.	2022. 1. 7.

4. 편의지원 사전신청 유의사항 안내

- 편의지원 사전신청은 장애인 등 수험생의 편의지원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서접수와는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편의지원 사전신청을 하더라도 원서접수를 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편의지원 사전신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 국가공무원 7·9급 공채 및 경채시험 등의 필기시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 논문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은 선택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접수합니다.(필기시험이 없는 경채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편의지원 사전신청 당시 장애정도(상이등급)와 응시예정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의 장애정도(상이등급)가 다를 시에는 편의지원 제공내역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공채시험(7·9급)에서는 장애인 모집단위에서만 시험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 사전신청 시 시험시간 연장을 승인 받았더라도, 장애인 모집단위가 아닌 일반 모집단위로 원서접수 시 시험시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예) 사전신청 시 1.5배 시간연장 승인 후 9급 검찰직 원서접수 ⇒ “시간연장 불가”
-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을 제출(등기우편) 하여야 사전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전신청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 간 유효합니다.
 - ※ 단,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대상자의 경우 해당 서류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